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2. 12. 17.

행 정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12월 6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2년 12월 6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93회 영등포구의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2002. 12.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정진)

- 가. 개정이유
 - 동 기능전환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한 자치행정의 유효기간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 조례 제48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4년 6월 30일”로 한다.
- 다. 참고사항
 - 행자부 자제 13101-714(2002.12.3), 서울시 행정 13101-6108(2002.12.4)호 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 등 승인 통보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홍수)

동 기능전환에 따라 “2002.12.31”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한 “자치행정과”의 유효기간이 “2004.6.30”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연장 승인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중 “2002.12.31”을 “2004.6.30”로 개정하는 것으로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동사무소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동사무소의 기능은 민원사무 일부와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한시기구등설치및운영지침”에 의거 우리 구도 “자치행정과”로 기구를 설치하여 “2002.12.31”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의 정착이 미흡한 바, 행정자치부에서 본 “한시기구 및 정원승인사항”으로 기구 및 정원의 연장 승인이 통보되어온 바 우리 구에서도 이에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
----------	----

제출년월일 : 2002. 12. 6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동 기능전환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한 자치행정과의 유효기간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조례 제48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4년 6월 30일”로 한다.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행자부 자제 13101-714(2002.12.3)호
 - 서울시 행정 13101-6108(2002.12.4)호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없음
- 다.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48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4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부 칙(2000. 11. 27) 제1조 생 략 제2조(자치행정과 존속시한) 자치행정과의 존속시한은 2002년 12월 31일까 지로 한다.	부 칙(2000. 11. 27)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자치행정과 존속시한)2004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부지일부매각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02. 12. 1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11월 16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02년 12월 6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93회(정례회) 제3차 위원회(2002년 12월 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고평득)

가. 제안이유

- 당산동3가 223-6에 재건축중인 당산 철우아파트 주민 230명이 2001. 10. 19. 이후 3회에 걸쳐 당산1동 공영노외주차장 일부를 보행용 도로로 매각해 줄 것을 집단민원으로 요청한 사항으로
- 현재 아파트 정문에서 대중교통(지하철 등) 이용시 850m를 걸어가야 하나 주차장 일부를 보행용 도로로 매각해 줄 경우 450m가 단축되어 2003년 5월 입주예정인 468세대 2,000여명의 주민생활 편의와 토지의 합리적 이용측면을 고려하여 주차장 부지 일부를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매각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당산1동 공영노외주차장 부지 일부 매각
 - 위 치 : 영등포구 당산동3가 6-1
 - 매각면적 : 총 2,447㎡(741.5평)중 112㎡(34평)매각.
 - 매각금액 : 2개의 토지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통보된 가격으로 결정.
 - 특기사항 : 폭 4m, 길이 28m의 아파트 주민 “보행용 도로” 개설을 위해 매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태성)

- 재건축 아파트(구 철우아파트)의 출입구가 동쪽에 하나밖에 없고 대중교통(지하철 및 버스)이용 및 관공서가 출입구 반대방향에 위치하고 있어 468세대 입주예정자가 약 850m를 우회하게 되어 재건축 아파트 조합측에서 주차장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도로를